

2025년 직원채용 공고

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5. 9. 23.

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

I. 채용개요

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

| 채용분야 | 직위 | 담당직무 | 인원 | 채용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|--|
| 1)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| 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발달 지원-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진단·평가, 교육 및 부모 상담 등- 센터 내부 및 외부 유관기관 수업 진행•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| 1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25.10.20. ~ 25.12.31.※ 평기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※ 만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 |
| 2) 다문화가족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 | 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다문화가족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- 멘토링 및 진로·진학 컨설팅 운영- 진로·진학 캠프 기획 및 운영•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| 1명 | |

※ 수습기간 3개월 적용

※ 성별·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응시원서 내 채용분야 체크필수 (채용 전 분야 중복지원 가능)

2 근무조건

| 채용분야 | 직위 | 근무시간 | 보수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|
| 1)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| 팀원 | 월~금, 주 5일(09:00~18:00) 주 40시간 근무 <u>*휴게시간 1시간 (12:00~13:00)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월급 2,286,280원- 가족수당, 종사자특별수당, 급량비 별도지급-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회/2년)-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|
| 2) 다문화가족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 | 팀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 호봉 기준※ (병역포함) 최대 3호봉 이하 채용- 가족수당, 종사자특별수당, 급량비 별도지급-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회/2년)-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|

※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로 근무시간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대체 휴무 가능

3 응시 자격 및 채용 기준

가. 응시 자격

| 채용분야 | 자격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)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| 가. 언어치료학과,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 발달·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 예정자 포함)로 언어 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|
| 2) 다문화가족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필수사항 :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• 각 호(가~다)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 가능 <p>가.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나.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.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</p> <p>*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노년학, 보육학, 교육학, 상담학, 다문화학 등</p> <p>*관련사업 :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</p> |

나. 채용 기준

- 응시연령 : 정년(만 60세)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
- 임용관련 :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
- 결격사유 : 다음 결격사유(1~14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| 결격사유 |
|--|
| 1. 피성년후견인 |
|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|
|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|
|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|
| 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|
|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|
|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| 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12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|
| 13. 채용신체검사결과(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」)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|
| 14. 「2025년 가족사업안내」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|

II. 채용절차 및 일정

1 전형절차

가. 1차 서류전형

- 접수기간 : 25. 9. 23.(화) ~ 25. 10. 10.(금) 12시
- 합격발표 : 25. 10. 14.(화),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 및 개별통지

나. 2차 면접전형

- 일정 및 장소 : 25. 10. 16.(목) 15:00,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내 진행
- 전형대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선발방법 : 심사위원 면접심사 결과, 고득점자 순 선발

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접수방법

- 이메일(dj9989@hanmail.net) 접수
 - * 이메일 접수 시, 파일명 :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생년월일
-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- * 주소 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-17, 대전광역시가족센터
 - * 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- 주의사항
 - * 채용사이트를 통해 전송된 이력서(예: 잡코리아, 사람인)는 접수로 인정하지 않으며, 반드시 기관 지정 양식을 사용해 본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

나. 제출서류

- 각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

| 제출서류 | | 인정기준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 (필수) | 응시원서 | • 별도로 첨부된 기관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|
| | 자기소개서 | • 별도로 첨부된 기관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|
| |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 • 별도로 첨부된 기관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|

- *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증자료(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관련 자격증 사본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* 각 증명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으로,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,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함

다. 문의처

-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사무국) ☎ 042-252-9989 → 내선 5번 연결

3 유의사항

- 가.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
- 나. 경력 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,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접수하지 않음.
- 다.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음.
- 라. 적격자 없을 때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마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가능하며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 청구가능(우편발송 불가, 방문 수령)
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.
- 바.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사.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및 차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 끝.

취업취약계층 범주

- 저소득층 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 - * 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
-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
 - *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
 - * 청년(만 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
-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 - *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
- 고령자(만 55세 이상)
- 장애인(장애인 증명서로 확인)
-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